

민원사무명	옥외광고사업 등록 신청(신고)				
민 원 내 용	옥외광고사업을 신규등록 및 재개업, 휴업, 폐업 신청(신고)하려고 하는 민원				
근 거 법 규	·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, 제47조				
주 관 부 서	도시계획과	협조부서 (기 관)	세무1과(면허세 관련)	처 리 기 간	7일
현장조사사항	신규 및 재개업 시 현장 확인				
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	신 청 ⇒ 접 수 ⇒ 검토 및 현장조사 ⇒ 결 재 (위임전결 : 과장)				
구 비 서 류	<민원인 제출서류> 1. 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의 경우 -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국가기술자격증 제외) -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 이수 증명서류 1부 2. 휴·폐업 신고의 경우 : 옥외광고사업 등록증(또는 분실사유서) 3. 재개업 신고의 경우 -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 제외) 사본 1부				
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	관련부서명	협 의 사 항			
	없 음				
후 속 이행사항	후속민원명	절 차	시 기	처리부서	조치사항
	없 음				
수수료 및 제반경비	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부과 (신규등록 : 15,000원 / 재개업, 휴업, 폐업 : 수수료 없음)				
관련후속 이행사항	옥외광고사업 등록증 교부				